

군산 한라비발디 더프라임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건분주택 운영 안내]

- 본 아파트 건분주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건분주택 관리를 사이버 건분주택(<https://brand.hldni.com/gunsantheprime/>)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건분주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분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brand.hldni.com/gunsantheprime/>)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일 이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당첨자에 한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발표일 이후에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Ⅵ.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Ⅶ.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의 일정 안내에 따라 건분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분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 상담전화(☎1660-0633)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많은 상담전화와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28.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8.)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군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2.04.28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X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시(특별 및 일반공급)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 계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 및 변경은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rand.hldni.com/gunsantheprime)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입인자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사본 첨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미적용	미적용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2023년 05월 08일(월)	2023년 05월 09일(화)	2023년 5월 10일(수)	2023년 05월 16일(화)	2023년 05월 20일(토) ~ 05월 23일(화)	2023년 05월 29일(월) ~ 05월 31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건본주택 (군산시 미장동 501-2)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당일 오전 12시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3.04.0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주택행정과 - 12297호(2023.04.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12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대 29층, 7개동 총 633세대 [일반공급 389세대, 특별공급 244세대(일반[기관추천] 45세대, 다자녀가구 60세대, 신혼부부 82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시기 : 2026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160	01	84.8546A	84A	84.8546	23.3048	108.1594	58.3293	166.4887	45.3675	305	30	30	54	9	27	150	155	14
		02	84.6905B	84B	84.6905	23.3168	108.0073	58.2166	166.2239	45.2798	157	15	15	28	4	14	76	81	8
		03	111.4916	111	111.4916	29.7771	141.2687	76.6398	217.9085	59.6090	19	-	1	-	-	-	1	18	1
		04	115.2912	115	115.2912	31.5117	146.8029	79.2517	226.0546	61.6404	26	-	2	-	-	-	2	24	1
		05	136.1171	136	136.1171	36.2954	172.4125	93.5675	265.9800	72.7750	124	-	12	-	3	-	15	109	6
		06	258.0758	258	258.0758	70.3264	328.4022	177.4024	505.8046	137.9802	2	-	-	-	-	-	-	2	-
											633	45	60	82	16	41	244	389	30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x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의 내용 중 약식 표기로 표현된 내용이 있으니 주택형과 약식 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본주택 분양사무실(☎1660-0633)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확장 금액별도)

(단위:세대,원)

약식 표기	해당 (동)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1회차	2회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3.09.20.	2024.02.20.	2024.07.22.	2025.1.20.	2025.05.20.	2025.10.20.	입주시
84A	102동 1호 104동 1호, 3~5호 105동 2,3,5호 106동 1,3,4호 107동 2,3,5호	305	1층	3	98,360,000	248,140,000	346,500,000	10,000,000	2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103,950,000
			2층	13	98,360,000	255,840,000	354,200,000	10,000,000	25,420,000	35,420,000	35,420,000	35,420,000	35,420,000	35,420,000	35,420,000	106,260,000
			3층	14	98,360,000	263,540,000	361,900,000	10,000,000	2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108,570,000
			4층	14	98,360,000	271,240,000	369,600,000	10,000,000	26,960,000	36,960,000	36,960,000	36,960,000	36,960,000	36,960,000	36,960,000	110,880,000
			5층	14	98,360,000	278,940,000	377,300,000	10,000,000	2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113,190,000
			6층~10층	70	98,360,000	282,740,000	381,100,000	10,000,000	2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114,330,000
			11층~20층	129	98,360,000	286,640,000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21층 이상	48	98,360,000	290,440,000	388,800,000	10,000,000	28,880,000	38,880,000	38,880,000	38,880,000	38,880,000	38,880,000	38,880,000	116,640,000
84B	102동 2호 104동 2호 105동 1,4호 106동 2,5호 107동 1,4호	157	1층	2	98,170,000	240,930,000	339,100,000	10,000,000	2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33,910,000	101,730,000
			2층	8	98,170,000	248,430,000	346,600,000	10,000,000	2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103,980,000
			3층	8	98,170,000	255,930,000	354,100,000	10,000,000	2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106,230,000
			4층	8	98,170,000	263,530,000	361,700,000	10,000,000	2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108,510,000
			5층	8	98,170,000	271,030,000	369,200,000	10,000,000	2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110,760,000
			6층~10층	40	98,170,000	274,830,000	373,000,000	10,000,000	2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11층~20층	55	98,170,000	278,530,000	376,700,000	10,000,000	2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113,010,000
			21층 이상	28	98,170,000	282,330,000	380,500,000	10,000,000	2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38,050,000	114,150,000
111	101동 1호	19	2층	1	129,210,000	362,000,000	491,210,000	10,000,000	39,121,000	49,121,000	49,121,000	49,121,000	49,121,000	49,121,000	49,121,000	147,363,000
			3층	1	129,210,000	372,890,000	502,100,000	10,000,000	40,210,000	50,210,000	50,210,000	50,210,000	50,210,000	50,210,000	50,210,000	150,630,000
			4층	1	129,210,000	383,890,000	513,100,000	10,000,000	41,310,000	51,310,000	51,310,000	51,310,000	51,310,000	51,310,000	51,310,000	153,930,000
			5층	1	129,210,000	394,890,000	524,100,000	10,000,000	42,410,000	52,410,000	52,410,000	52,410,000	52,410,000	52,410,000	52,410,000	157,230,000
			6층~10층	5	129,210,000	400,280,000	529,490,000	10,000,000	42,949,000	52,949,000	52,949,000	52,949,000	52,949,000	52,949,000	52,949,000	158,847,000
			11층~20층	10	129,210,000	405,780,000	534,990,000	10,000,000	43,499,000	53,499,000	53,499,000	53,499,000	53,499,000	53,499,000	53,499,000	160,497,000
115	101동 2호	26	2층	1	133,640,000	376,830,000	510,470,000	10,000,000	41,047,000	51,047,000	51,047,000	51,047,000	51,047,000	51,047,000	51,047,000	153,141,000
			3층	1	133,640,000	388,270,000	521,910,000	10,000,000	42,191,000	52,191,000	52,191,000	52,191,000	52,191,000	52,191,000	52,191,000	156,573,000
			4층	1	133,640,000	399,600,000	533,240,000	10,000,000	43,324,000	53,324,000	53,324,000	53,324,000	53,324,000	53,324,000	53,324,000	159,972,000
			5층	1	133,640,000	411,040,000	544,680,000	10,000,000	44,468,000	54,468,000	54,468,000	54,468,000	54,468,000	54,468,000	54,468,000	163,404,000
			6층~10층	5	133,640,000	416,760,000	550,400,000	10,000,000	4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165,120,000
			11층~20층	10	133,640,000	422,370,000	556,010,000	10,000,000	45,601,000	55,601,000	55,601,000	55,601,000	55,601,000	55,601,000	55,601,000	166,803,000
			21층 이상	7	133,640,000	428,090,000	561,730,000	10,000,000	46,173,000	56,173,000	56,173,000	56,173,000	56,173,000	56,173,000	56,173,000	168,519,000
136	101동 3,4호 103동 1~4호	124	1층	4	157,750,000	448,640,000	606,390,000	10,000,000	50,639,000	60,639,000	60,639,000	60,639,000	60,639,000	60,639,000	60,639,000	181,917,000
			2층	6	157,750,000	462,610,000	620,360,000	10,000,000	52,036,000	62,036,000	62,036,000	62,036,000	62,036,000	62,036,000	62,036,000	186,108,000
			3층	6	157,750,000	476,470,000	634,220,000	10,000,000	53,422,000	63,422,000	63,422,000	63,422,000	63,422,000	63,422,000	63,422,000	190,266,000
			4층	6	157,750,000	490,440,000	648,190,000	10,000,000	54,819,000	64,819,000	64,819,000	64,819,000	64,819,000	64,819,000	64,819,000	194,457,000
			5층	6	157,750,000	504,410,000	662,160,000	10,000,000	56,216,000	66,216,000	66,216,000	66,216,000	66,216,000	66,216,000	66,216,000	198,648,000
			6층~10층	30	157,750,000	511,340,000	669,090,000	10,000,000	56,909,000	66,909,000	66,909,000	66,909,000	66,909,000	66,909,000	66,909,000	200,727,000
			11층~20층	48	157,750,000	518,380,000	676,130,000	10,000,000	57,613,000	67,613,000	67,613,000	67,613,000	67,613,000	67,613,000	67,613,000	202,839,000
			21층 이상	18	157,750,000	525,310,000	683,060,000	10,000,000	58,306,000	68,306,000	68,306,000	68,306,000	68,306,000	68,306,000	68,306,000	204,918,000
258	105동 3호 106동 1호	2	21층 이상	2	299,140,000	1,162,430,000	1,461,570,000	10,000,000	136,157,000	146,157,000	146,157,000	146,157,000	146,157,000	146,157,000	438,471,000	

▣ 공통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청약당첨자가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11타입, 115타입, 136타입, 258타입의 건축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에 해당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로 수납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내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납부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위탁사 또는 시공사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위탁사 또는 시공사는 대출알선의 의무가 없고, 수분양자는 대출알선 여부와 무관하게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세대,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납부(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위탁사 또는 시공사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 중도금은 해당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및 잔금 선납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 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2009.4.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와 공급되는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가 다를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코어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를 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 사실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84A	84B	111	115	136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8	3	-	-	-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	-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	-	-	3
	중소기업 근로자	6	4	-	-	-	10
	장애인	12	6	-	-	-	1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0	15	1	2	12	60
신혼부부 특별공급		54	28	-	-	-	8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4	-	-	3	16
생애최초 특별공급		27	14	-	-	-	41
합계		150	76	1	2	15	24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의거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1145 2130 1348"> <thead> <tr> <th data-bbox="286 1145 757 1185">구 분</th> <th data-bbox="761 1145 1193 118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data-bbox="1198 1145 1630 1185">그 밖의 광역시</th> <th data-bbox="1635 1145 2130 118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산시 해당)</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6 1189 757 1225">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61 1189 1193 1225">300만원</td> <td data-bbox="1198 1189 1630 1225">250만원</td> <td data-bbox="1635 1189 2130 1225">2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228 757 1265">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61 1228 1193 1265">600만원</td> <td data-bbox="1198 1228 1630 1265">400만원</td> <td data-bbox="1635 1228 2130 1265">3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268 757 1305">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61 1268 1193 1305">1,000만원</td> <td data-bbox="1198 1268 1630 1305">700만원</td> <td data-bbox="1635 1268 2130 1305">4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308 757 1345">모든면적</td> <td data-bbox="761 1308 1193 1345">1,500만원</td> <td data-bbox="1198 1308 1630 1345">1,000만원</td> <td data-bbox="1635 1308 2130 1345">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산시 해당)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산시 해당)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추천기관

구분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 재대군인	
장애인	전라북도청 장애인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 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 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군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 전라북도내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이상~10년미만	10	
		1년이상~5년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8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 04. 01.~ 2023. 06. 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종류</th> <th>지방세정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종류	지방세정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종류	지방세정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특별 공급 운용지침」 별표3)

- ①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 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 04. 01.~ 2023. 06. 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 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 정시가표준액으로하되, 없는 경우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종류</th> <th>지방세정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종류		지방세정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외
건축물종류		지방세정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Ⅲ

일반공급신청자격

▣ 일반 공급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신청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인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산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순위</th> <th>주택형</th> <th>청약관련 신청자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민영 주택</td> <td rowspan="2">1순위</td> <td>전용 60㎡초과 85㎡이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td> </tr> <tr> <td>전용 85㎡초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td> </tr> <tr> <td></td> <td>2순위</td> <td>전 주택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td> </tr> </tbody> </table>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산시 해당)</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산시 해당)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산시 해당)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취소 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예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예금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 한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가능 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시 청약신청가능 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차액 충족기준 : 청약접수당일까지 충족시 청약신청가능 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기준(주택청약 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신청가능 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변경한분 신청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의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하고, 주택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를 따릅니다.

▣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서류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거주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본인 청약가점 점수=①+②+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8조

<p>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p> <p>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p> <p>1. 수도권 : 1년</p> <p>2. 수도권외의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p> <p>④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p> <p>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이상에 해당하는 자</p>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5.0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청약(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 (군산시 미장동 5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2023.05.09.(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05.10.(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 접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청약시]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청약시]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

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도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구비서류(건분주택 방문청약신청자는 청약신청시에 제출, 인터넷청약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건분 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건분 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본인 청약시)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8)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 관련” 현재 거주지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특별공급	○	자격입증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청약자격 확인 및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 대장 무허가건물 확인서	해당 시	- 소유권 이력 및 등기접수일 등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미등기 주택의 경우
	○	주택공시가격확인서	해당 시	- 소형자가 주택(공동, 개별, 단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시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한국부동산원 발급) - 기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 가능한 공문(무허가건물 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포 함), 대리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 과거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등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 제출 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①,②,③ 해당직장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 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중소득세 미신고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②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 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 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 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 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2023.01.01.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또는사업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접수장소
※ 상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대상자격		소득세납부 제출서류	발급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개별공시지가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만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 공시지가 조회 후 출력
생애최초 특별공급		○	토지등기부등본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출력
(추첨제)		○	시가표준액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위텍스 →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조회 후 출력

V **당첨자 발표일정**

▣ **당첨자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05.16.(화)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보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가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brand.hldni.com/gunsantheprime/)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5.16.(화) ~ 2023.05.25.(목)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5.1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선정 방법 및 동·호수결정

구분	선정방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85㎡이하)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가 군산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및 전라북도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정당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자격 검증서류 제출안내

구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대상자	장소
내용	2023.05.20.(토) ~ 2023.05.23.(화), 10:00~17:00	특별공급 / 일반공급당첨자 (예비입주자는 추후 별도통보)	건본주택 (군산시 미장동 501-2)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전 자격확인 서류일체 및 계약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계약체결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자격 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선정 사실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의 자격확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건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계약체결전 자격확인서류'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가 신청내용과 당첨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권 포기자로 처리합니다.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전 접수기간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전 기간 내에 건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서류(계약 시 필요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일반공급 추첨제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본인 계약시)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주민등록증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관련" 현재 거주지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8)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참조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피부양 직계비속(만 30세 이상, 미혼)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8(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Ⅶ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자 및 장소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3.05.29.(월) ~ 2023.05.31.(수) (10:00~17:00) [3일간]	당사 건본주택 (군산시 미장동 501-2)	1660-0633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당첨자계약 체결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금액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아파트분양금액	전북은행	1013-01-4588124	코리아신탁(주)	입금시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장형시스템에어컨, 가전제품, 현관중문, 가구 등)납부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바랍니다.
- ※ 계약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201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101동1102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102홍길동'으로 기재)
- ※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발급용) ※ 인감증명서는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일체	해당자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소명자료)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계약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계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계약자본인발급용)
	○		주민등록증,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체결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인 계약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부적격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 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준수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등을 참고하시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 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청약 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3)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4)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5)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 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6) 두 곳 이상 복수청약을 하고 동일한 발표일에 이중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최초분양 계약자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 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지정 기간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등 각종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키수령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 문제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무이자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 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위탁자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위탁자 및 시공사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기관은 위탁자가 선정합니다.
-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 대출보증 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신용 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총분양대금의 10%)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 납입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위탁자가 부담(납부)하며(단, 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자의 중도금 무이자 용자등 판촉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별도의 약정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 대출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 해야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 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 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각 중 대출보증서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등에 의해 제한 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 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 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 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인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 "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 하거나 담보 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 및 보수사항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 입주예정일 : 2026년 03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 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암반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맘스카페, 실내 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관리사무소, 경비실(2개소), 어린이놀이터(2개소), 유아놀이터, 실외 주민운동시설 등
-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물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Ⅷ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계약

▣ 발코니 확장비

(단위:원,VAT포함)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총금액	계약시	2024.7.22	입주시	
84A	16,900,000	1,690,000	1,690,000	13,520,000	
84B	16,900,000	1,690,000	1,690,000	13,520,000	
111	23,000,000	2,300,000	2,300,000	18,400,000	
115	23,000,000	2,300,000	2,300,000	18,400,000	
136	29,000,000	2,900,000	2,900,000	23,200,000	
258	49,000,000	4,900,000	4,900,000	39,200,000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분양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준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등 제세공과금 이미 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상하 세대간 확장구간 내벽의 연속성 및 우수관, 선풍통 등의 제거로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생활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 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 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 및 확장세대 측벽에 단열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비확장세대 실사용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 계약 세대의 해당 발코니 천장 및 바닥에 상하부층의 발코니확장 여부에 따라 단열재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침실1 발코니(1개소) 및 다용도실을 제외하고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배수 및 우수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람.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콘센트류,스위치류)의 개수, 타입, 배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북은행	1013-01-4588033	코리아신택(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추가옵션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에 유의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201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101동1102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102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시 상기 계좌로 입금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불가]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수탁자 및 위탁자,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될 경우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없음)
-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인테리어 (단위:원,VAT포함)

구분	설치내용	공급금액						비고	
		84A	84B	111	115	136	258		
인테리어	1. 현관중문	3연동 중문설치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 미선택 시 현관 날개벽 설치
	2. 주방마감 특화	[주방특화] ① 주방 상판/벽, 아일랜드상판 세라믹타일 ② 사각싱크볼	3,300,000	3,200,000	4,800,000	4,900,000	5,600,000	5,700,000	* 미선택 시 벽면은 벽타일, 상판은 MMA 인조석, 기본싱크볼 설치 * 84A의 경우 알파룸특화 옵션 선택시 [주방특화]

	[알파룸 특화 옵션 선택시 주방특화] [84A만 선택가능] ① 주방 상판/벽 세라믹타일 ② 아일랜드상판 확대/홀바형벽 세라믹타일 ③ 유리장식장 상판/벽 세라믹타일 ④ 사각싱크볼	5,3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선택불가하고 [알파룸 특화 옵션 선택시 주방특화] 선택 가능 * 84B의 경우 아일랜드특화 옵션 선택시 [주방특화] 선택불가하고 [아일랜드 특화 옵션 선택시 주방특화] 선택 가능 *건본주택을 통해 세라믹타일 적용부위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특화 옵션 선택시 주방특화] [84B만 선택가능] ① 주방 상판/벽 세라믹타일 ② 대형 아일랜드상판 세라믹타일 ③ 사각싱크볼	해당없음	4,4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아트월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W:1200×H:1800, 500 x 6T)	2,900,000	2,9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미선택 시 벽면은 포세린타일(400*800) 기본설치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W:1500×H:1800, 500 x 6T)	해당없음	해당없음	3,800,000	3,800,000	6,300,000	4,800,000	* 미선택 시 136타입 목문 맞은편은 거실벽지 기본설치	
	주방 아트월 세라믹타일 (W:1500×H:1800, 500 x 6T)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000,000	해당없음	* 미선택 시 벽면은 거실벽지 기본설치	
4. 알파룸 특화	84A : 아일랜드확대(홀바형) + 유리장식장 + 주방팬트리 + 현관팬트리(확대)	2,8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미선택 시 일반침실(목문), 복도팬트리 기본설치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위치, 사양, 수량이 상이함 * 주방/아일랜드/유리장식장 상판 MMA 시공	
	136 : 알파룸 팬트리특화 (가구도어+시스템선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00,000	해당없음	* 미 선택시 알파룸은 시스템선반은 설치되지 않고 목문 기본설치	
5. 아일랜드특화	84B 식탁형 대형아일랜드	해당없음	9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미선택 시 기본형 아일랜드(축소) 기본설치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위치, 사양, 수량이 상이함 * 주방/아일랜드/유리장식장 상판 MMA 시공	
6. 드레스룸특화	선택1 : 벽판넬조명선반	2,300,000	2,100,000	2,100,000	2,4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 미선택 시 봉타입 시스템선반 기본설치 * 해당평형 해당옵션 2개 중 1개 선택 가능 * 옵션 선택2, 4 선택 시 일부선반 축소됨	
	선택2 : 벽판넬조명선반 + 의류관리기	[삼성] DF60A8500HG	3,300,000	3,100,000	3,100,000	3,4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엘지] S3GOF	3,900,000	3,700,000	3,700,000	4,0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선택3 : 벽판넬조명선반 + 서랍장 + 유리슬라이딩도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100,000	3,600,000		
	선택4 : 벽판넬조명선반 + 서랍장+유리슬라이딩도어 + 의류관리기	[삼성] DF60A8500HG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100,000		4,600,000
[엘지] S3GOF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700,000	5,200,000		
7. 붙박이장	침실2 붙박이장(1개소)	1,300,000	1,3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1,300,000	해당없음	* 미선택 시 수납장 없음 * 침실2,3 또는 침실3,4 각각 선택	
	침실3 붙박이장(1개소)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300,000	해당없음		
	침실4 붙박이장(1개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1,500,000	1,5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8. 광폭마루	바닥 :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알파룸(팬트리 등)	1,500,000	1,400,000	1,800,000	1,800,000	2,200,000	4,100,000	* 미 선택시 일반마루 설치	

◎가전기기

(단위:원,VAT포함)

구분	설치내용		공급금액						비고	
			84A	84B	111	115	136	258		
가전기 기	1. 전기쿡탑	선택1 : 2구 인덕션 + 1구 하이라이트	[삼성] NZ63T5601AK	700,000	700,000	700,000	7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 84A/B,111,115 : 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 기본설치 (해당옵션 중 1개 선택가능) * 136, 258 : 주방 가스배관 미설치로 2구인덕션+1구하이라이트 기본설치 (3구 인덕션만 옵션)
			[엘지] BEY3GTBI	900,000	900,000	900,000	9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선택2 : 3구 인덕션	[삼성] NZ63T5701AK	800,000	800,000	800,000	800,000	200,000	200,000	
			[엘지] BEI3GQBI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700,000	700,000	
	2. 전기오븐		[삼성] NQ36A6555CK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 미선택 시 가구수납(도어) * 옵션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 콘센트 설치
			[엘지] MZ385EBT1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3. 식기세척기		[삼성] DW60T7065SS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 미선택 시 가구수납(도어) * 옵션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 콘센트 설치
			[엘지] DIB22S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4. 냉장고 Set	삼성 비스포크 -냉장 : RR40A7995AP (도어마감기준 : 글램or새틴) -냉동 : RZ34A7965AP (도어마감기준 : 글램or새틴) -김치 : RQ34A7945AP (도어마감기준 : 글램 or새틴) 엘지 오브제 -냉장 : BC1L2AA (도어마감기준 : 글라스) -냉동 : BC1F2AA (도어마감기준 : 글라스) -김치 : BC1K2AA (도어마감기준 : 글라스)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 미선택 시 냉장고 설치공간 제공 (상부장, 키큰장 기본설치) * 옵션선택 시에만 1구 콘센트 3개소 설치, 미선택 시 2개소 설치
				4,800,000	4,800,000	4,800,000	4,800,000	4,800,000	4,800,000	
5. 고급형 아일랜드 후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00,000	600,000	* 미 선택시 기본형 아일랜드후드 설치	

◎ 고급형 LED 조명

(단위:원,VAT포함)

구분	설치내용		공급금액						비고
			84A	84B	111	115	136	258	
전기	거실+식탁	• 거실 : 고급형 LED 조명 + 디밍시스템 • 식탁 : 고급형 LED 조명 + 디밍/색온도시스템	2,500,000	2,300,000	2,500,000	2,500,000	2,700,000	해당없음	거실 색온도 기능 없음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거실+가족실+식탁	• 거실 : 고급형 LED 조명 + 디밍시스템 • 가족실+식탁 : 고급형 LED 조명 + 디밍/색온도시스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400,000	거실 색온도 기능 없음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침실1,2,3	• 고급형 LED 조명 + 디밍/색온도시스템	1,200,000	1,2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0,000	해당없음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136 : 알파룸에는 기본형 설치
	침실1,2,3,알파룸	• 고급형 LED 조명 + 디밍/색온도시스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600,000	해당없음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침실1,2,3,4	• 고급형 LED 조명 + 디밍/색온도시스템	해당없음	해당없음	1,600,000	1,6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침실1,2,3,4,5	• 고급형 LED 조명 + 디밍/색온도시스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0,000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욕실1,2	• 욕실장 간접등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해당없음	욕실장 간접등 디밍/색온도 기능 없음
	욕실1,2,3	• 욕실장 간접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00,000	욕실장 간접등 디밍/색온도 기능 없음

◎ 천장형시스템에어컨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모델명(LG제품)
84A	선택1	2	거실 + 침실1	4,100,000	[LG] RNW0720C2SP (84타입_거실) [LG] RNW0320C2SP (84타입_침실1) [LG] RNW0200C2SP (84타입_침실2,3, 알파룸(84A)) [LG] RNW0600C2SP (111,115타입_거실) [LG] RNW0320C2SP (111,115타입_주방, 침실1) [LG] RNW0200C2SP (111,115타입_침실2,3,4) [LG] RNW0720C2SP (136타입_거실) [LG] RNW0320C2SP (136타입_주방, 침실1) [LG] RNW0200C2SP (136타입_침실2,3, 알파룸) [LG] RNW0720C2SP (258타입_거실) [LG] RNW0600C2SP (258타입_주방) [LG] RNW0400C2SP (258타입_침실1) [LG] RNW0230C2SP (258타입_침실2) [LG] RNW0200C2SP (258타입_침실3,4, 알파룸) [LG] RNW0320C2SP (258타입_침실5, 가족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기능만 제공하며, 난방·공기청정기능 없음
	선택2	3	거실 + 침실1,2	5,700,000	
	선택3	4	거실 + 침실1,2,3	6,700,000	
	선택4	5	거실 + 침실1,2,3 + 알파룸 ※ 알파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불가	8,100,000	
84B	선택1	2	거실 + 침실1	4,200,000	
	선택2	3	거실 + 침실1,2	6,100,000	
	선택3	4	거실 + 침실1,2,3	7,200,000	
111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6,000,000	
	선택2	4	거실 + 주방 + 침실1,4	7,300,000	
	선택3	6	거실 + 주방 + 침실1,2,3,4	9,700,000	
115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6,100,000	
	선택2	4	거실 + 주방 + 침실1,4	7,600,000	
	선택3	6	거실 + 주방 + 침실1,2,3,4	10,000,000	
136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6,200,000	
	선택2	4	거실 + 주방 + 침실1,2	7,600,000	
	선택3	5	거실 + 주방 + 침실1,2,3	8,900,000	
	선택4	6	거실 + 주방 + 침실1,2,3 + 알파룸	10,000,000	
258	선택1	5	거실 + 주방 + 침실1,5 + 가족실	10,900,000	
	선택2	9	거실 + 주방 + 침실1,2,3,4,5 + 가족실 + 알파룸	16,100,000	

◎절수페달

(단위:원,VAT포함)

구분	설치내용			공급금액					비고
				84A	84B	111	115	136	
설비	절수페달	[자타] JATA-910	전타입 공통	100,000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단위:원,VAT포함)

구분	설치내용			공급금액					비고
				84A	84B	111	115	136	
설비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경동나비엔] TAC521-20S		1,400,000			2,800,000	* 미선택 시 기본 환기시스템	

구분	설치내용			공급금액	비고		
설비	고급형 도기/수전	84A 84B 111	[아메리칸스탠다드] C831200E/C360000B(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1 (공용욕실)	1,950,000	* 미선택 시 기본형 도기수전류 설치	
			[아메리칸스탠다드] FA1673(세면플랫 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CCASF516(반다리일체형 세면기)				
		115 136	[아메리칸스탠다드] FB5781/FH6125(욕조수전, 슬라이드바)	욕실2 (부부욕실)			
			[아메리칸스탠다드] C831200E/C360000B(비데일체형 양변기)				
			[아메리칸스탠다드] FA1673(세면플랫 수전)				
	258	[아메리칸스탠다드] CCASF516(반다리일체형 세면기)	욕실1	2,200,000			
		[아메리칸스탠다드] FC5780(해바라기 샤워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C831200E/C360000B(비데일체형 양변기)					
		[아메리칸스탠다드] CCAS0440(언더볼 세면기)			욕실2		2,100,000
		[아메리칸스탠다드] FA1673(세면플랫 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FC5780(해바라기 샤워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FB5781/FH6125(욕조수전, 슬라이드바)							
[아메리칸스탠다드] C831200E/C360000B(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3	1,950,000					
[아메리칸스탠다드] CCAS0440(언더볼 세면기)							
[아메리칸스탠다드] FA1673(세면플랫 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FC5780(해바라기 샤워수전)					

▣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금액 및 납부일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북은행	1013-01-4588033	코리아신탁(주)	계약시	2024.7.22	입주시

※ 계약 체결 이후 상기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 한 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초옵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 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201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101동1102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102홍길동'으로 기재)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 선택품목공급계약을 체결·공급하는사항입니다.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공동주택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 과 별개사항 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별도계약 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입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옵션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유상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 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동일 제품 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별도로 통지하는 계약체결 일정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 합니다.
- 모든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선택은 발코니 확장시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시 관련 날개벽이 삭제되거나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신발장 측면에 날개벽에 설치되며,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사이즈)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철재 문틀과 함께 시공되며, 제조사, 형태 및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에 따라 본 공사 시 커튼 박스의 길이 및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일반가구, 주방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 벽,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바닥 일부 난방 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선택(기본/옵션)에 따라 가구의 형태와 규격,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 표면재의 무늬, 패턴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옵션 마루 바닥재는 자재의 수급 시점에 따라 마루코어재(바디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 텍스처,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실리콘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마루 바닥재 선택 시 시공범위는 해당 유닛 내 기본 마루가 설치된 바닥 공간 일체가 텍스처 광택 마루로 일괄 적용 및 시공됩니다.
- 옵션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요철에 의한 줄눈 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아트월 옵션 타일과 도배지가 만나는 접합부는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며, 옵션 선택 시 아트월과 만나는 커튼 박스 안쪽은 벽지 시공됩니다.
- 거실아트월 세라믹은 대형타일로 파손 시, 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세라믹 상판과 기본 품목인 인조대리석(MMA)는 상판 두께가 다르게 설치됩니다.
- 주방 기본 MMA 상판 자재는 공급사의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제품의 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등의 사유) 및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 등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옵션 미선택 시 벽체는 일반 타일 (600X300), 상판은 인조대리석 (MMA) 상판으로 변경되며, 기본 싱크볼로 변경 설치됩니다.
- 옵션 가구용 조명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용 조명이 포함된 옵션 품목 미선택 시 해당 조명은 미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품목 선택 시, 기본 냉매매립배관(거실, 침실1)은 미설치됩니다.
- 내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견본주택에 위치 표기만 하였으며, 실 시공 시 크기, 색상, 마감 재질 및 형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4A 알파룸 특화 옵션 미선택 시 벽체가 조정되고, 현관팬트리 선반과 아일랜드가 축소되며, 옵션가구(장식장, 주방팬트리) 일체가 삭제되고 복도 팬트리와 목문이 기본설치됩니다.
- 84A 알파룸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설치되는 조명기구 사양 및 수량이 차이가 있으며 미선택시 옵션가구 및 가구조명은 삭제되고 침실 등이 설치됩니다.
- 84A 알파룸 특화 옵션 선택 시 복도 팬트리가 시공되지 않으며, 알파룸 특화 옵션과 주방상판 옵션은 별개로 선택합니다.
- 84A 알파룸 특화 미선택 시, 주방 MMA(기본) 상판 선택 시 아일랜드쪽 벽면은 거실 벽지로 시공됩니다.
- 84A 알파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주방 팬트리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특화옵션 미선택시 알파룸에 설치되는 에어컨을 말함.)
- 84A 알파룸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알파룸에는 목문이 설치되며, 주방 팬트리와 동일한 벽지로 시공됩니다.
- 136 알파룸 팬트리 옵션 품목 선택 시 목문이 삭제되고 가구도어 및 시스템 선반이 형성되며 알파룸과 동일한 벽지로 시공됩니다. (벽지는 변경없음)
- 냉장고 옵션 품목 미선택 시 냉장고장(상부장 및 측면 키큰장)만 설치되며, 냉장고의 종류에 따라 냉장고장 밖으로 냉장고장 등이 돌출될 수 있으며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옵션 품목 선택 시 해당 브랜드의 냉장고 도어 색상은 선택 가능하며, 도어 개폐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옵션 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 가전 옵션품목의 전자제품은 두개 사 중 한개 사만 선택 가능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시만 해당부위에 콘센트가 설치되며, 미선택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가전용 콘센트는 옵션 품목 선택 시에만 해당 제품용 콘센트가 제공됩니다. (단, 냉장고용으로 1구 콘센트 2개가 설치되며, 냉장고 SET 옵션 품목 선택 시 1구 콘센트 3개가 설치됩니다.)

- 1도어 냉장/냉동/김치 냉장고 Set(유상옵션)은 글라스 도어패널 마감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드레스룸 옵션 품목 미선택 시 옷봉 타입의 기본형 드레스룸 선반이 설치되며, 침실1과 동일한 벽지로 시공됩니다.
- 드레스룸 옵션2 선택 시 시스템 선반이 일부 축소되고 의류관리기가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84A는 전신거울이 설치되지 않으며, 약세사리류만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84B, 136, 258은 전신거울과 약세사리류가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111, 115는 전신거울만 설치되며, 약세사리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평형별 침실2와 침실3의 붙박이장 규격 및 형태는 상이하며,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36, 258 드레스룸 옵션2 선택시 유리슬라이딩도어가 포함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시 벽체와 가구목도어가 기본 설치됩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침실1(벽걸이 에어컨용)2개소에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선택시 기본제공 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침실1)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기본 매립 냉매배관 2개소(거실,침실1)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실제 시공시 실내기 설치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상부 세대 비확장 선택시 천장 단열재 두께변경 및 시스템에어컨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공기청정기능 없음)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드레인배관은 침실1 발코니 또는 세탁실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골조 공사완료 후 시스템 에어컨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본 매립 냉매배관(거실, 침실1)시공을 위한 추가공사 비용이 청구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조명기구, 배선기구, 대기 전력차단 스위치 등의 위치, 사양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작동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필터교체
- 공기청정형환기 시스템 설치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기본세대 환기장치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프리미엄 도기 수전류 유상옵션 금액은 유상 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기본도기류, 수전류, 부부욕실 비데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전기렌지(인덕션,하이라이트등)를 옵션품목으로 설치하여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스배관 및 밸브 설치됩니다. (단, 기본(136,258타입)으로 전기렌지(인덕션, 하이라이트등)가 설치되는 타입은 주방 가스배관 및 밸브가 제외됩니다.) 또한, 가스밸브, 배관 일부는 노출 시공되며, 제품 크기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X 기타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등 주위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제기하실 수 없으며,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형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형별 등에 따라 공급금액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 세대가 속한 동,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등에 적합 하도록 시공 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마감재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누수, 주변세대 피해 등)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 선호도 반응을 원할 경우 잔금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광권, 소음, 야간경관 조명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견본주택으로 서면통보 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및 실 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문주,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배치상 자전거보관대,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입,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구조개선, 시공성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 함)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분양 후 변경될 수 있기에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 부터 60일간 각종 출입구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 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과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전 기타 자세한 주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광권, 혐오시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한 이유로 단지과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담보 존속 기간 및 하자 보수

- 하자 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 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타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벌칙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 법령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설계관련 주요고지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1. 일반사항

-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교육환경평가, 건축심의, 경관심의,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대지의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당해 단지 내·외 및 타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환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형태 등이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출입구 설치에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방법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공용 태양광 설비가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옥상층(102동, 103동, 104동, 106동)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102동, 103동, 104동, 106동) 및 지하1&2층 : 헬룸(3개소)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한전 지상개폐기,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차 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경관조명설비, 공용 조명 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옥상/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조망 간섭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빗물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무인 택배 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일부동 및 일부층은 주동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충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전기차충전설비에 대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가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용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상부에는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되는 사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지상에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또는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2. 단지배치

- **단지와 인접한 도로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인허가관청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및 보행 동선계획에 의하여 경비실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동측, 남측 2개소가 설치되고,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외부 도로는 인허가 진행에 따라 제반시설(무단횡단 방지 횡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 진출입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공간의 선형, 포장,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의 단지 내 조경 공간선형, 식재, 시설물, 포장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이로 인한 옹벽 생성구간의 마감재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로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음.
- 단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내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는 위치 및 형태,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분리수거대와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외에 설치되는 D/A 등의 시설물은 조경계획 특화 및 세대간섭에 의하여 설치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행정관청의 지침 및 심의, 인허가, 디자인 특화, 품질개선, 현장시공여건 반영 등으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하여 먼지,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경사로, 조경공간(선형, 식재, 시설, 포장)은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 명칭 및 내용은 행정관청의 지침 및 의견, 인허가,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인접대지와와의 레벨 차이로 옹벽, 산벽, 조경석 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및 의견, 인허가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투시형웬스 또는 조경시설물 및 식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및 의견, 인허가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과 동측 경계부에 각종 심의 등 의견에 따라 안전한 통행 및 도로변 경관 향상을 위하여 조경공간이 조성되며, 외부인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조경공간, 수공간,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진동, 시야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조경공간 (식재, 시설물) 등으로 저층부 세대에 시야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층이 계획되어 있으며, 데크의 수직면 및 단지 내 레벨차에 따른 옹벽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조경석 쌓기, 옹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상부에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및 의견, 인허가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전 수질관리는 관리 주체의 의무이며,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방용 에어매트 구간에는 교육 식재가 되지 않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및 의견, 인허가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휴게소의 조경공간 및 산책로 인근 저층부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오수중계펌프장의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은 관계기관 인허가, 시공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 및 환기시설이 해당동의 세대 인근 공용부PD 및 외벽, 옥상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계 후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청소는 관리 주체의 의무임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기능상실 및 냄새, 환경 민원 등에 대하여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동 주변으로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가 배치되어있으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악취나 소음, 시야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외부조명은 행정관청의 지침 및 의견, 인허가,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비상차량동선 계획으로 인한 관청 협의 및 실제 시공시의 현장 여건에 따라 조경 계획 및 보도라인, 차량진출입구 회차동선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주동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의 위치,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기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 동 상부 옥상의 형태 및 구조물의 색채, 입면 형태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옥탑장식물은 구조설계적용에 의하여 기둥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특화설계적용으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공용부의 창호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입면특화 디자인은 입면 패턴디자인을 고려하여 저층에 적용하며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외부시설물의 색채, 옥탑장식물, 조명, 마감계획은 경관심의에 따라 적용되었으며, 실시공시 관청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상부에는 피뢰침, 안테나, 옥탑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설치되며,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주동 하부 지하에 설비공간(헬룸, 제원헬룸, 기계실, 전기실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03동, 105동, 107동 인근에 보행자 진입로가 설치되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4. 단위세대

- 세대내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хин치, 레일, 가구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84A와 136 타입입니다. 84B는 84A의 색상과 마감 111, 115, 258 타입은 136 타입의 색상과 마감으로 시공되오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모든 창호 및 유리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창호 본 공사 시 커튼 박스의 길이 및 깊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창호 특성상 창문을 닫는 순간 잠기는 부위와 창틀 측면에 일부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창호에는 철제 난간이 시공되며, 난간 재질 및 시공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공간별 크기는 마감재, 가구 설치 등으로 실 시공 시 안목치수가 도면과 경미하게 달라질 수 있음
- 일반가구, 주방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 벽,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바닥은 일부 난방 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마루 바닥재는 자재의 수급 시점에 따라 마루코어재(바디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 텍스처,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음
- 바닥 실리콘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요철에 의한 줄눈 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류 및 스위치류),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등의 위치, 사양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실내온도조절기의 제품 사양,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전체 LED 조명이 기본으로 설치됨
- 본 시공 시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우물천장 높이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에어컨 매립배관은 거실과 침실에 시공되며, 매립배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미선택 시 세대환기 룸컨트롤러의 형태가 변경되며, 이동식 에어모니터가 제공되지 않음
- 거실, 침실, 기타 모든 실의 창호 및 유리의 제조사와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욕실(방음 및 방수 기능이 조적 시공 대비 강화된)로 시공됨
- 가스배관 설치로 인해 상부장의 수납 깊이 축소 및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주방 상부장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 사이 유격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의 가전(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설치 시 견본주택에 전신된 가전과 상이하게 돌출 또는 배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본인 소유의 가전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람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 도배 등 마감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으로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 및 붙박이장 하부는 별도 마감재(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출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각 분양 TYPE별 단위세대의 침실, 거실, 화장실 등의 칸막이 벽체의 구조체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 경량벽체로 구성되며, 각 구성 벽체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 본 공사 시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에 설치되는 급수, 급탕 분배기는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하부장 무늬 패턴은 본 공사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대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방 기본형과 확장형 레이아웃은 서로 상이하하며, 주방 확장시 바뀌는 부분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람.

- 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 가스배관 및 드레인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주방 상부장을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1층 및 2층에 세대가 없는 2층 및 3층 세대의 침실1 발코니 벽면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D/A 설치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마루마감재는 가구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됨.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세대 통신단자함은 관련 기준에 따라 노출된 침실 벽체 등에 설치되므로,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 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한국전기설비규정 282.84」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3의 주) 3」에 의거 세대 통신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세탁실, 배란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 확인, 가스밸브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전기 및 통신 마감재(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월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자식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개별적인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화장실 천정 점검구 개수 및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미화장 발코니 (1개소) 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든 세대는 화재에 대비하여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 위치, 개수는 견본주택 소방 준공용이므로 실제 시공시에는 소방법에 따라 헤드 위치나 개수가 변경됨. 또한 각 발코니에 설치되는 측벽형 헤드에 따라 각방의 커튼박스 폭이 줄어들거나 삭제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의 환기덕트 및 렌지후드 배기덕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상부장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세대의 주방 및 화장실 배기는 직배기방식이 적용되며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음.
- 세대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일부 배관 및 계량기가 노출되며, 도시가스 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견본주택 위치와 다를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환기디퓨저 및 스프링클러,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경우 렌지후드 및 욕실환용 닥트가 발코니에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유니트 장비 및 덕트는 발코니 또는 세탁기실 천장에 노출 시공되고 덕트와 연결된 각 실의 디퓨저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유니트 장비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 등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선택해야 하며, 설치 세대 및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실이 다소 협소해질 수 있음.
- 에어컨 매립배관은 침실1(벽걸이 에어컨용),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2개소에 설치됨. 또한 옵션 에어컨설치 시 침실1발코니(또는 세탁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에 따라 침실1 커튼박스 폭이 줄어들거나 삭제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욕실환기팬,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은 시스템욕실로 시공되며, 세대 욕실내 바닥난방이 적용되나 샤워부스 및 욕조, 양변기 하부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음.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음.
-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음.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싱크대 하부 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
- 105동, 106동의 최상층 258타입 하부세대(84B)의 실외기실에는 258타입 테라스 우수처리를 위해 입상관이 설치 됨
- 세대 실외기실 그릴창 사이즈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조명기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단종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모양 변경 포함)

- 거실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라믹등 타일류 및 석재는 파손시 수리, 교체에 어려움이 있으니 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 빨래건조대는 사용시 높이에 따라 실외기실 도어 개폐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바랍니다.

5.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유시설

- 지하 1,2층 주차통로 유효높이는 2.7m 이상이고, 지하 3층 주차통로 유효높이는 2.3m,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 임. 다만, 실제 시공 시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제연휀룸 등이 노출될 수 있어 출입구의 유효높이와 통로의 유효높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 입주전 및 현장방문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설치로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램프 지붕구조물에 따른 시야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모든 동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최하층은 105~107동만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됨. (타 동은 주차램프를 통해 지하3층으로 접근가능)
-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빗물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비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체육관, 맘스카페, 작은도서관 등),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분양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곱집기의 재질, 디자인, 수량이 상이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 및 견본주택 상 부대시설의 모형 및 이미지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 요구를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곱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내부 구획, 마감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주차장 및 지상1층의 계단, 데크출입구 등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실 구획 및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함.
- 외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조경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105동 지하에 주민운동시설, 맘스카페,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하부에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며, 인근 어린이집 위치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인근 어린이집 위치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용공간 내부로 급수, 가스, 소화배관이 시공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지붕 파라펫은 특화설계적용 및 조경계획에 의하여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지붕에 설치될 시 인근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실외기 설치위치가 조정될 수 있고 차폐시설,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음.

▣ 홍보물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 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와 단지 등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 안내서, 분양 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CG) 및 VR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류, 스위치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등의 제품 사양(형태 및 모양 포함) 및 위치,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위치는 건본주택 사용을 위한 소방시설로 본 공사 시 관련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대 내 스프링클러의 위치와 상이합니다.
- 건본주택 내 비상대피 통로 확보를 위해 발코니 철제난간이 일부 미시공되어 있으며, 본 시공시 철제난간이 시공 됩니다.

▣ 기타

- 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 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승인 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세대의 초등학생은 군산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 향후 사업 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요인 발생시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소방	전기	정보통신
회사명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케이제이엔지니어링	(주)이린
감리금액	2,961,958,890	848,270,000	571,909,000	220,000,000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및동력설비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 성능등급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군산시 지역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주 : 코리아신탁㈜
 준공(예정)일 : 2026년 2월 28일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동 126 의 21필지
 층 수 : 지하 3층, 지상 29층
 연면적 : 121,894.0654㎡
 (평가연면적 : 121,222.0027㎡)

건축물의 구분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자 : 가운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3-0316-9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3. 03. 23. -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공동주택 성능등급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군산시 지역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청자 : 코리아신탁㈜
 3.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동 126 의 21필지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층벽을 차단성능	★★★★
2. 중량층벽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열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형개발 지양	-
3. 표광사·열로·성토등(방파기·홍수량을 한)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지탄소 에너지절 절용 기술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인 제품(EPO)의 사용	★
11. 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급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용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친화 녹지율	★
22. 생태연결통	★
23. 생물서식공간(외요양)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자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공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상호 활용률	★
13. 홈트러킹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트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소화설비	★★
4. 수평단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등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군산시 지역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연도 : 20260228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동 126번지 의 21필지
 층 수 : 지하3층 / 지상29층
 연면적 : 121,894.0654(㎡)
 건축물의 구분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가운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3-주-에-14-0050
 평가자 : 최선우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배출량
0	64.6	1	1+	48	22.0
100				56	
200				64	
300				72	
400					
500					

에너지 소비비율 건축설계 : 64.6 (에너지 효율 등급 1+)

에너지효율등급 : 1+ (CO₂ 배출량 48 kg/㎡·년)

에너지효율등급 : 1+ (CO₂ 배출량 22.0 kg/㎡·년)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5.4	47.6	37.1	9.9
급탕	30.7	34.1	25.3	7.0
조명	8.5	7.7	21.2	3.6
환기		3.3	9.0	1.5
합계	64.6	92.7	92.6	22.0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한국부동산원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제3항제29의2)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비고
2.3m 이상 (지하 1, 2층의 경우 2.7m 이상)	2.7m 이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3-101-0001500호	₩199,176,509,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유한회사 나눔디앤씨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것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유한회사 나눔디앤씨임을 계약자는 인지하고 동의한다.
- 2.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위탁자 유한회사 나눔디앤씨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유한회사 나눔디앤씨가 부담한다.
-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계약자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유한회사 나눔디앤씨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4.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 유한회사 나눔디앤씨 또는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6.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자는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7. 위탁자 유한회사 나눔디앤씨 또는 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8. 코리아신타(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유한회사 나눔디앤씨와 계약자 간에 또는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와 계약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타(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9.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수탁자(사업주체)	위탁자	시공사
상호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유)나눔디앤씨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전라북도 전주시 기린대로 468, 101호(덕진동1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210114-0096731	110111-0274699

☐ 홈페이지 주소 : <https://brand.hldni.com/gunsantheprime/>

☐ 견본주택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01-2

☐ 분양문의 : ☎1660-0633

대표번호 1660-0633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 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